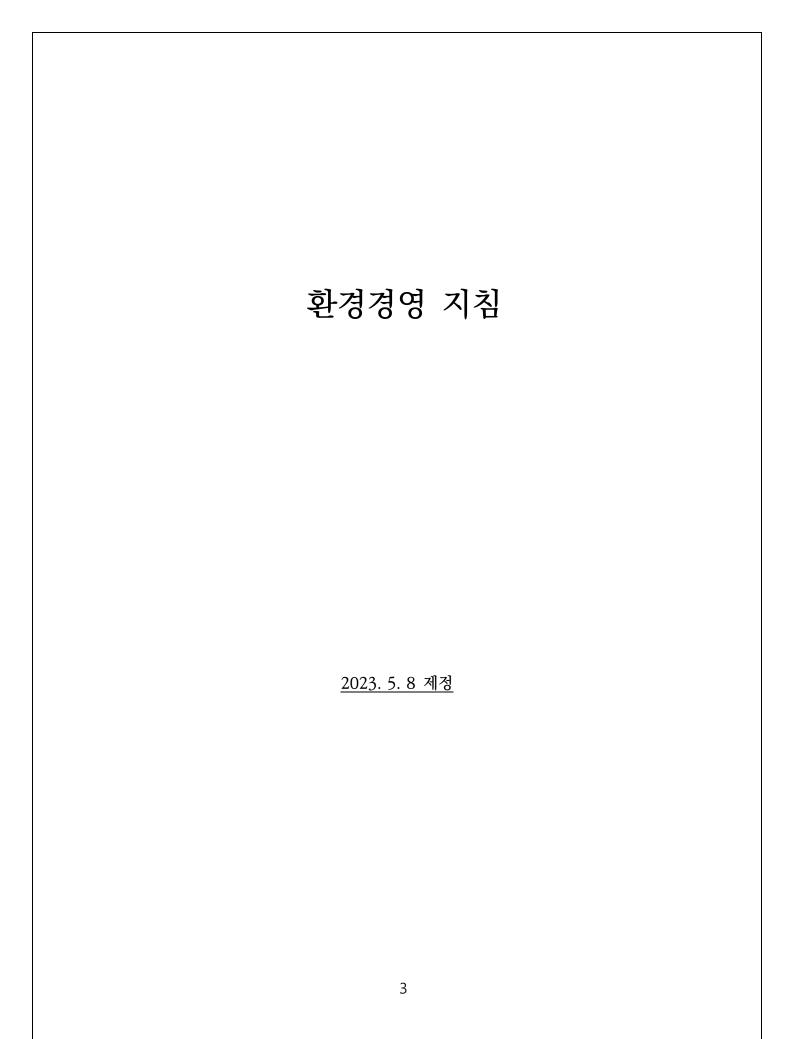
eWidePlus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Report



목 차

환경	1. 환경경영 지침	 3
	2. 인권경영 규정	 5
사회	3. 공정거래 지침	 11
	4. 개인정보보호 규정	 19
지배구조	5. 윤리경영 지침	 27



I. 확경경영방침

- 1. 이와이드플러스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 2. 이와이드플러스는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 3. 이와이드플러스는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경영 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4. 이와이드플러스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 5. 이와이드플러스는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II. 환경경영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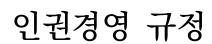
이와이드플러스는 제품 설계, 생산 등의 기업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예방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을 측정하고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수자원 관리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배출 이전에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2023. 5. 8 제정

인권경영 정책

제1장총칙

- 가. (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이와이드플러스 (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나.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 다. (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규정

- 가. (차별금지) ①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 나. (근로조건 준수) ①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 ③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인도적 대우) ①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③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 라.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 마.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①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바. (산업·안전보건 보장) ①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②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 사. (고객의 인권 보호) ①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②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아.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자. (신고제도) ①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02-3445-3913 / 이메일: ewideplus@ewideplus.com / 팩스: 02 3445 3902

-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가.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I. 인권경영 방침

(주)이와이드플러스의 인권경영

이와이드플러스는 차별 없고 건강한 조직문화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 관련 원칙을 반영한 인권경영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고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강제·아동 노동 금지, 미래 세대에게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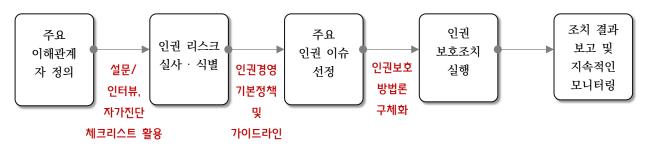
건강한 조직문화 요소를 도출하고, 매년 전 임직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이드플러스는 인권 리스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인권 실사, 설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별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 관리 및 조치하고 있다.

• 주요 이해관계자 별 주요 인권 이슈 및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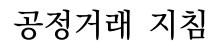
주요 이해관계자	원칙	내용	조치
구성원-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과다노동 및 피로누적	유연근무제 운영,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과다노동 및 피로누적	유연근무제 운영,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 인권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예시)



[양식] 범용 체크리스트

구분	刈 班	답변	
인권정책 수립	인권정책을 수립하였다		
차별금지	고용, 교육 기회, 보상, 급여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	
노동자권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예	
강제노동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	
아동노동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고용 시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업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예	
인도적 대우	정신적 혹은 육체적 억압, 학대, 불합리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예	
	언어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ଔ	
근로시간	국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		
	초과근무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예	



2023. 5. 8 제정

I. 공정거래 원칙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 1. 이와이드플러스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이와이드플러스는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II. 공정거래 규정

제1장 총칙

- 가.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이와이드플러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다. (위반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이와이드플러스의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제2장 자유경쟁 추구

- 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 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다.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 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3장 법규의 준수

- 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나.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 다.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 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제4장 상생협력

- 가.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나.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라.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부칙

가. (시행일) 본 공정거래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III. 공정거래 세부지침

제1장 총칙

- 가.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 세부지침은 이와이드플러스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거래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은 이와이드플러스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와이드플러스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공정거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공정거래 원칙 준수

- 가. 제1조(공정거래) ① 이와이드플러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
 - ②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③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
 - ④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 · 거짓광고를 하지 않는다.
- 나. (동반성장) ①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3장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 가. (공정거래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공정거래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는 공정거래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다. (보상체계) 공정거래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공정거래규범」및「공정거래 세부지침」점검

- 가. (공정거래 점검) ① 이와이드플러스는 공정거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규범」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의 업무적용 시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준법담당자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 ② 이와이드플러스는 공정거래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거래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공정거래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부칙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 실천 서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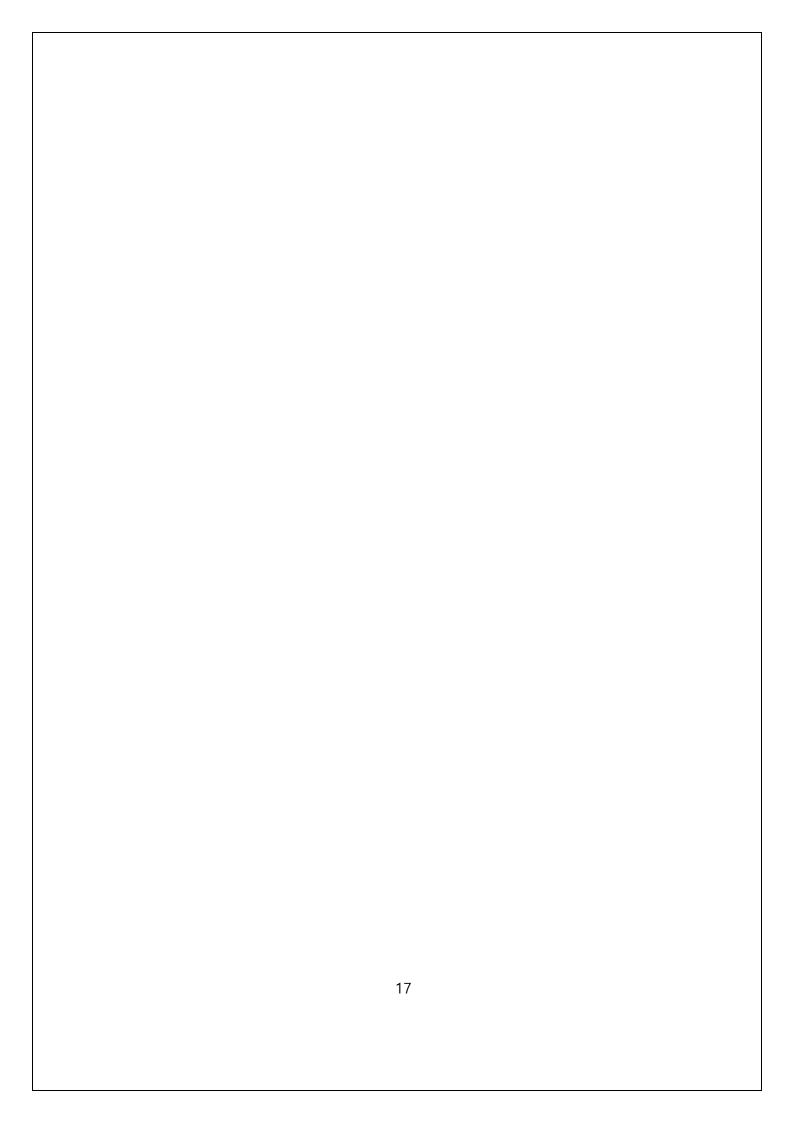
나는 이와이드플러스의 임직원으로서 「공정거래규정」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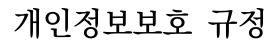
- 1. 나는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2. 나는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 또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또는 내규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준법담당자에게 제보하겠습니다.

나는 「공정거래규정」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이와이드플러스 임직원 일동





2023. 5. 8 제정

I.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장 총칙

- 가.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와이드플러스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 다.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①항 또는 ②항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 1-1.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감독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 <u>이와이드플러스</u>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7.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조직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 ①보안담당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 2.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 3.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적극적인 피해구제
-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사차원의 교육을 진행
- 5. 고객개인정보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모의 훈련 계획 및 시행
- 6.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부서장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주관하는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 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라. (개인정보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가.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보안지침) ①모든 임직원은 입사, 퇴사 및 연봉계약 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회사 정보자산으로의 접근을 허용할 때에는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제반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③회사 내 모든 시설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구역·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④제3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 ⑤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⑥개인정보는 사전에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의 임의 목적으로 방치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 생산, 유통, 보관, 폐기 등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 가.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 점검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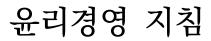
- 가.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①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관리 시스템 및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II. 개인정보처리 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이외에 개별 기업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처리 목적, 제공서비스 특성, 위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문서화해야 한다.



2023. 5. 8 제정

I. 윤리규범

가. 윤리경영 원칙

- 1.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 6.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나. 고객에 대한 윤리

- 1.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3.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다. 주주에 대한 윤리

- 1.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 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 3.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 2.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 3.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마. 윤리규범 적용
- 1. 본 윤리규범은 이와이드플러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2. 누구든지 이와이드플러스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본부장 및 준법 담당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윤리규범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II. 윤리경영 세부지침

가.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이와이드플러스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이와이드플러스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와이드플러스과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유리경영 원칙

제3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③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4조(차별금지) ①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②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①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②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 ④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6조(이해상충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②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7조(부정청탁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3.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제8조(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①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다. 고객에 대한 윤리

제9조(고객가치 제고) 이와이드플러스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0조(고객신뢰 제고) ①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1조(고객 이익과 정보 보호) ① 이와이드플러스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라. 주주에 대한 윤리

제12조(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제공)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권리 보호)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5조(환경, 안전의식 함양)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6조(법규의 준수) ①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②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제17조(사회공헌활동)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바.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제18조(윤리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당 본부장 및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자 보호) 해당 본부장 및 준법 담당자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체계)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III.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와이드플러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보고의무) 임직원은 이와이드플러스의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위반행위,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담당부서의 설치 및 운영)

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 / 전화 / 팩스 / 이메일

제5조(신고절차) ①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직위 등
- 2. 신고 대상자
- 3. 신고 경위 및 사유
- 4.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
- ②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처리) ①신고가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담당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담당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대에는 담당부서에 원상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담당부서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담당부서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8일부로 시행한다.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나는 ㈜이와이드플러스 임직원으로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나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는다.
- 2. 나는 법률이 금지하는 어떠한 금품 등도 주지 않고 받지 않는다.
- 3. 나는 부정청탁이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나는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이와이드플러스 임직원 일동